2024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2차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문화예술재단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차례

04 공통개요

06 2024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2차 한눈에 보기

07 예술지원

08 2024 주요 개선사항

12 2024 통합공모 2차 예술지원사업 대상사업 목록

13 유의사항

19 예술활동지원

33 예술창작기반지원

37 예술공간기반지원

45 예술인복지지원

49 청년지원

53 문화예술교육지원

54 2024 주요 개선사항

57 2024 통합공모 2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대상사업 목록

58 유의사항

67 연구실험형 트랙

2024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2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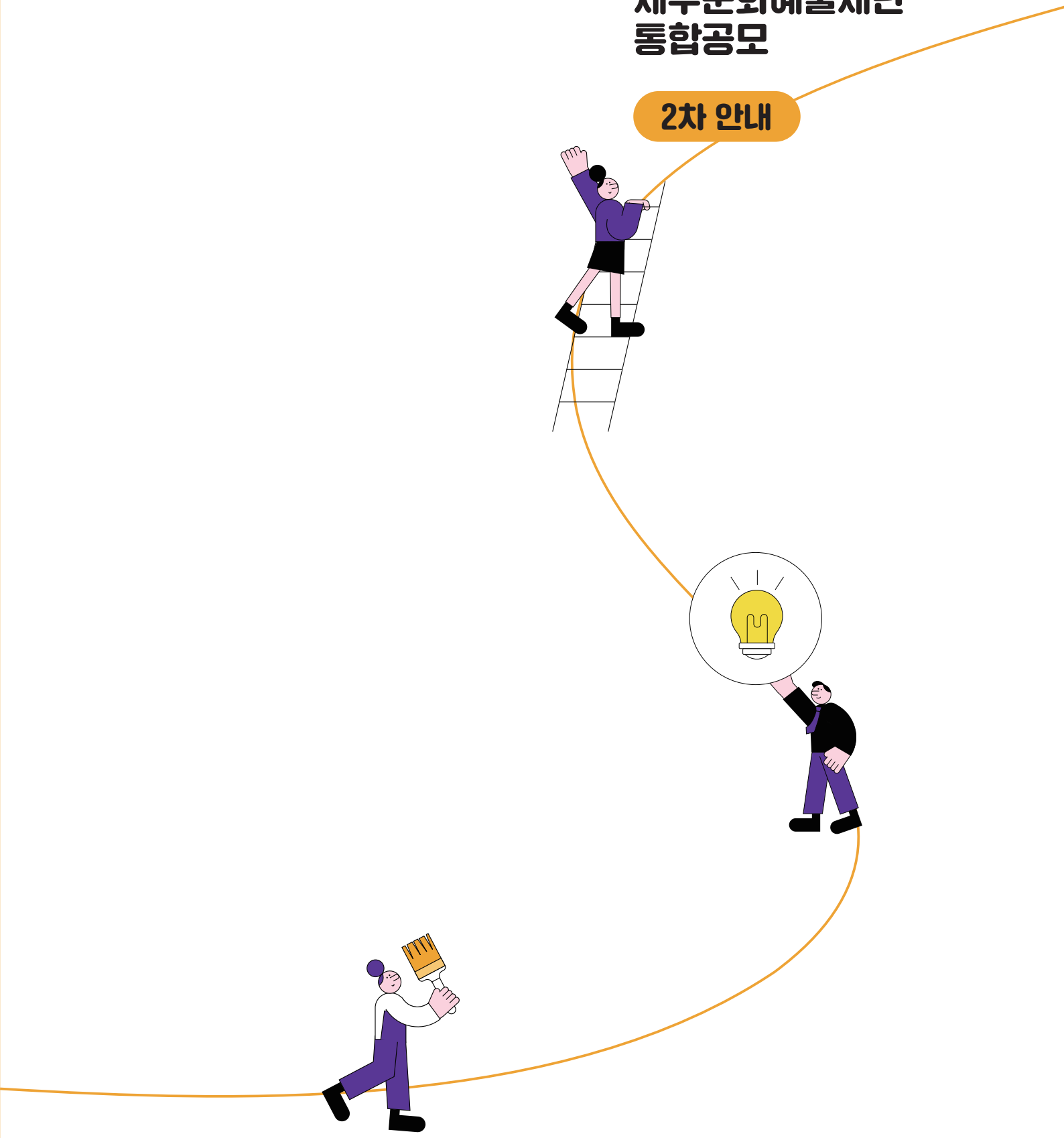

공통개요

공모절차 및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비고
공고	24. 2. 8.(목)	공모요강 및 일정 안내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재단 홈페이지: http://www.jfac.kr
지원 신청기간	24. 2. 15.(목) ~ 2. 27.(화) 17시 59분 59초	사업별 지원신청서 접수	ncas.or.kr
사업 설명회	24. 2. 15.(목) 16시	**서귀포시**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2층 매깨라 스튜디오 *서귀포시 홍중로 33	
	24. 2. 16.(금) 16시	**제주시**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 대회의실 *제주시 동광로 51	
선정심의	24. 3월	행정심의 / 서류심의 / 인터뷰심의	
결과발표	24. 3월 (예정)	심의 최종결과발표	

※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 연구실험형 트랙 별도 사업설명회 진행 안 함

지원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s://www.ncas.or.kr)을 통한 인터넷 신청 접수합니다.
  (전자 우편, 우편, 방문 접수 불가)
- 단체로 지원하시는 경우 대표자 개인 혹은 참여자 개인 ID로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청 접수 시 심의배제)
- 단체 지원신청 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에 '단체 대표자(개인)' 회원가입 후 '단체' 회원가입 및 지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마이페이지'에 단체 및 대표자 정보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단체의 명칭, 대표자명, 주소, 경력 사항 등)
- 2024년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는 지원신청부터 심의, 교부, 정산의 전체 과정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수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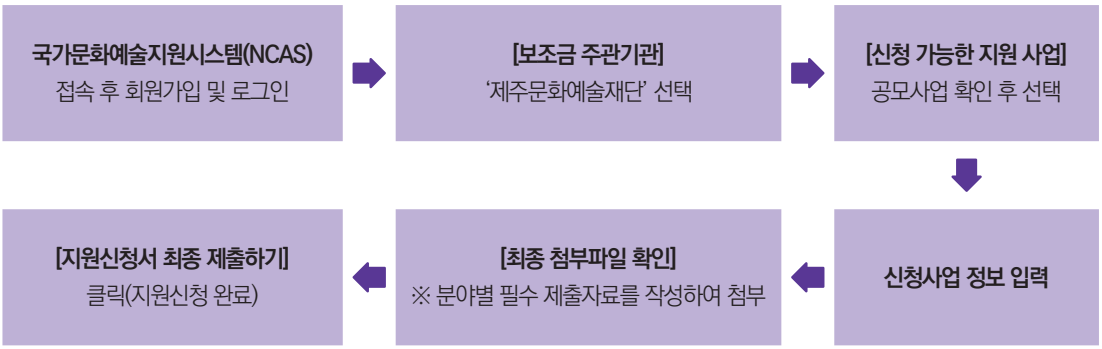

※ 지원신청 마감 당일은 신청자가 몰려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니 사전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 제출 이후라도 신청 마감일 17시 59분 59초 제출 이전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2024 통합공모 한눈에 보기

2024년 JFAC 통합 공모 2차

2월 공모, 접수 / 3월 심의, 발표

대분류	소분류	유형	지원목적	신청주체		지원장르							문의
				개인	단체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	
예술지원	예술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 활동지원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	●	●	●	●	●	●	●	●	예술지원팀
		국제예술 교류지원	예술인(단체)의 국제적인 예술활동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	●	●	●	●	●	●	●	
		국내아트페어 참가지원	제주작가의 아트페어 참가 지원을 위한 국내아트페어 참가 지원		●		●						
	예술인 복지지원	제주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제주도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지원	●		●	●	●	●	●	●	●	
	예술창작 기반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예술계 창작활동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한 기반 지원	●	●	●	●	●	●	●	●	●	
	예술공간 기반지원 민간 공간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민간 예술창작공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운영비 및 프로그램)		●	●	●	●	●	●	●	●	
		문화예술 거점 공간 프로그램 지원 (구 가치:가치 프로젝트)			●	●	●	●	●	●	●	●	
	청년지원	청년예술인 해외활동 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해외 예술활동 기반 구축(19세~39세)	●	●	●	●	●	●	●	●	●	
문화예술 교육지원	연구실험형 트랙	첫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신규 인력을 발굴,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	●	●	●	●	●	●	●	●	●	예술교육팀
		주제연구 활동 연구 지원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간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사회문제를 실험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 지원		●	●	●	●	●	●	●	●	

※ 별도 공모 공지 사업 : 제주예술인창작준비금/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

2024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2차 안내

예술지원

2024 주요 개선사항

함께 만드는 예술지원

예술하는 당신의 삶에 동행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술지원을 설계했습니다.

의견수렴채널 (온라인창구)	+	의견수렴채널 (라운드테이블)	+	전문가 FGI ↓ 관계자 회의	➡	결과도출 (개선사항 등)
도내 예술인/단체 747명(표본수) 참여		도내 예술인/단체 대상 15회 운영, 76명 참여		FGI : 2회 운영, 전문가 3인 참여		지원사업 개선 결과 도출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 지속가능한 창작기반 마련을 위하여
7개 분야 15대 실행과제 단기 8건, 중기 6건, 장기 1건을 도출했습니다.

분야	실행과제	도입시기
공모	①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통합안내	단기(2024년)
	② 조기공모(공모시기 앞당김)	단기(2024년)
집행	③ 창작자의 창작비 책정(본인 사례비) 또는 창작활동비 지급 *지원선정자 본인사례비	단기(2024년)
	④ 소액 창작지원금 무정산	장기
심의	⑤ 심의위원의 공정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	단기(2024년)
	⑥ 심의위원 풀 확대 및 전문성 제고	중기
지원신청 및 지원항목	⑦ 지원신청자격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	단기(2024년)
	⑧ 지원사업 신청요건 명확화	단기(2024년)
지원사업환류	⑨ 모니터링 전수 강화	중기
사업유형 정교화	⑩ 지원유형 정교화를 통한 지원 사각지대(원로-청년-장애예술) 최소화	단기(2024년)
	⑪ 집중(다년) 지원사업 확대	중기
	⑫ 지원선정 총액·총량제 도입	중기
	⑬ 대표공연 레퍼토리 창·제작지원	중기
간접지원	⑭ 예술활동 홍보지원 강화	단기(2024년)
	⑮ 지원금 내 돌봄비용 지원 : 양성평등 실현	중기

2024 예술지원제도의 개선

[7개 분야 15대 실행과제] 가운데 '8대 단기과제'는 24년에 즉시 도입합니다.

작품활동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모시기를 앞당겼습니다. (과제 ①)

- 당해연도 이루어진 공모를 전년도로 앞당겨서, '비수기' 없이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조기공고 : 전년대비 한달 빠른 공고(23년 공모는 23년 1월 공고 → 24년 공모는 23년 12월 공고)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통합공모를 시작합니다. (과제 ②)

- 연중 각기 다른 시기에 진행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일정을 통합으로 공지하여, 예술가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연중 2회차 통합 공고 : 24년 주요 지원사업은 '23년 12월'과 '24년 1월' 2회차로 나누어 일정 통합공지

(개인) 지원사업 선정자 본인의 사례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과제 ③)

- 창작 당사자의 예술활동 사례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예술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예술인의 성취의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기존(~2023)	개선(2024~)
개인 지원사업 선정자 본인사례비 책정 및 집행 불가	**개인** **지원사업 선정자 본인사례비 책정 및 집행가능 (최대 10%, 100만원 이내)**
단체 대표자 사례비 지원금의 20%까지 책정 및 집행 가능 ※ 법인단체 및 고유번호단체('소득세법'에 따라 대표자의 개인경비처리가 가능한 단체)에 한함	**단체** 기존(~2023)과 동일

심의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과제 ⑤)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접수방법, 접수처 등은 결과 발표 시 별도 공지

양식 상의 중복사항 및 행정용어 들을 쉽고 간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과제 ⑦)

- 지원신청서,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성과(결과) 보고서 등을 개선하여 예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3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예술활동이 제한되었던 현실을 반영하여, 예술창작활동 지원 단체 B형의 지원 자격을 완화합니다. (과제 ⑦)

기존(~2023)	개선(2024~)
설립 3년 이상 최근 3년간 2회 이상 실적	설립 3년 이상, 설립 이후 3회 이상 실적

‘다원예술’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과제 ⑧)

- 다원예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지원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다원예술 : 분야 간(문학, 연극, 음악, 전통, 무용, 시각예술) 크로스오버 또는 콜라보레이션

제주예술생태계에 기반하여 지원사업 유형을 개선했습니다. (과제 ⑩~⑪)

- 생애주기와 진입단계를 고려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설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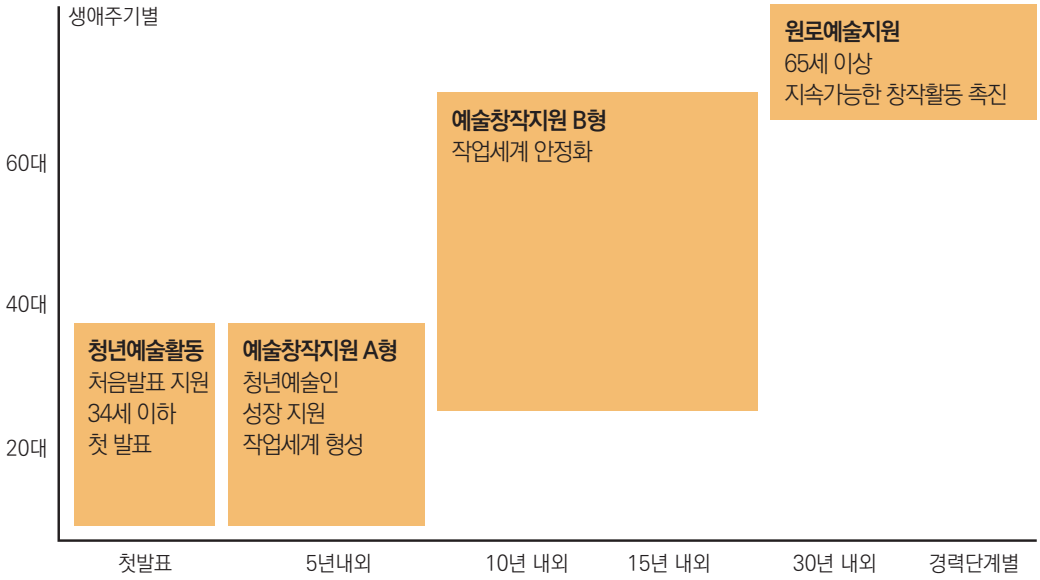

- **예술창작활동지원 개인**
  - ▸ 데뷔 5년을 기준으로 하여 A형 진입단계(신진예술인)와, B형 안전-고도화(활동경력 5년 이상 예술인) 두 단계 트랙으로 조정했으며, 트랙별로 지원신청 및 심의를 진행합니다.
  - ▸ 진입단계별 차등지원을 없애고, 장르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원금 정액제를 개선하였습니다.

※ 예술창작활동지원(개인) 진입단계 조정 및 장르별 정액제 시행

기존(~2023)		
문학		4백만원
A형	~6년	4백만원
B형	6년~16년	5백만원
C형	16년~	6백만원

개선(2024~)			
A형	~5년	문학	4백만원
		시각	5백만원
B형	5년~	공연	6백만원
		다원	6백만원

- **예술창작활동지원 단체**
  - ▸ **진입단계별 차등지원을 없애고, 활동규모에 따라 예술단체가 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예술창작활동지원(단체) ‘지원금 활동규모별 선택 정액제’ 시행

기존(~2023)	
A형(3년)	5백만원
B형(3년~)	최대 2천만원까지

개선(2024~)			
A/B형 모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7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

원로, 청년, 장애예술

촘촘한 지원사업 설계를 통하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유형	기존(~2023)	개선(2024~)
제주원로예술인 활동지원	70세 이상 ~ 30년 이상 경력	65세 이상 ~ 30년 이상 경력
청년예술활동지원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예술인(매년 2회 이상, 총 4회 이상의 경력 증빙)	예술활동증명(유효기간 내) 소지자 또는 제주에서 활동 실적이 4건 이상인 청년예술인 및 기획자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개인과 단체 지원	장애예술창작자 중심지원 ※ 개인 지원 비중 높임,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 주체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청년예술

청년예술인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을 청년예술인성장지원사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유형	기존(~2023)	유형	개선(2024~)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	단년 지원 연간 예술 활동 지원(정산 無)	청년예술인 성장지원사업	2년 연속 지원 1년차 : 리서치 지원(정산 無) 2년차 : 창작 발표 지원(정산 有)

국제교류예술활동지원

OUTBOUND 중심의 발표 및 프로젝트형 지원 강화

기존(~2023)	개선(2024~)
IN-OUTBOUND 모두 지원신청 가능	OUTBOUND 중심지원 ※ INBOUND형은 예술창작활동지원으로 지원 가능

창작활동과 발표공간의 One-Stop 지원으로 개선

기존(~2023)	개선(2024~)
재단 운영 전시공간 공모와 창작활동지원금 공모 사업 별도 운영	예술창작과 발표공간지원(예술공간이아/산지천갤러리) 유형 신설 ※ 창작활동 지원금 원스톱(One-Stop) 지원

예술활동 홍보의 자생력 강화를 우선(예술인 역량강화 및 홍보지원)하여 홍보지원을 강화합니다. (과제 ⑮)

- 홍보매뉴얼을 원론적인 내용보다 실제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구체화하였습니다.
- 2024년 예술인 역량강화 아트내비를 통한 예술가의 홍보 교육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024 JFAC 통합공모 2차 예술지원사업 대상사업 목록

대분류	소분류	유형	지원목적	신청주체		지원장르							지원규모
				개인	단체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	
예술지원	예술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 활동지원	장애예술인(단체)의 창작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	●	●	●	●	●	●	●	●	●	(개인) 500만원(정액) (단체) 최대 2,000만원
		국제예술 교류지원	예술인(단체)의 국제적인 예술활동 기반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	●	●	●	●	●	●	●	●	(개인) 1,200만원(정액) (단체) 최대 3,000만원
		국내아트페어 참가지원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어 참가지원		●		●						2,000만원(정액)
	예술창작 기반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지원	예술계 창작활동에 대한 담론 생산을 위한 기반 지원	●	●	●	●	●	●	●	●	●	800만원(정액)
	예술인 복지지원	제주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제주도내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 마련	●		●	●	●	●	●	●	●	월 100만원 (10개월)
	청년지원	청년예술인 해외활동 지원	청년예술인(단체)의 해외 예술활동 기반 구축 (19세~39세)	●	●	●	●	●	●	●	●	●	500만원 ~ 최대 1,500만원
예술공간기반지원	민간공간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	민간 예술창작공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운영비 및 프로그램)		●	●	●	●	●	●	●	●	3,000만원(정액)
		문화예술 거점 공간 프로그램 지원 (구 가치:가치 프로젝트)			●	●	●	●	●	●	●	●	2,000만원(정액)

유의사항

지원자 책임신청제

-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신청 시에 예술인(단체)이 예술활동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인(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확인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를 작성하고 최신 정보로 수정 바랍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 참여 예술인 인권 보호 의무
- 표준계약서 사용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 의무
-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 선정 예술인, 단체 대표자는 교부신청 시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의무 ※ 참여 예술인 전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제출
- 주최, 주관, 후원 표기, ‘제주인놀다’ 개최 공연 및 전시 등록
- 지원사업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워크숍, 교육 협조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보조금 사용 및 정산 안내에 따른 사업 수행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평가(전문가평가, 행정평가, 현장 모니터링 등) 협조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관련 안내

예술지원 내

유형	중복신청	중복 선정	유형	비고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	×	제주장애예술인창작준비금	그 밖의 타 유형 중복신청 가능 및 중복 선정 불가
국제예술교류지원	×	×	청년예술인 해외활동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	×	문화예술 거점 공간 지원	

예술지원 외

유형	중복신청	중복 선정	사업
예술공간 기반지원	×	×	문화예술교육지원
그 밖의 예술지원	○	○	

※ 그 밖의 예술지원-문화예술교육지원 간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이 가능하나 사업 추진 내용은 달라야 함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사업 및 부적격 시 처리 방법

지원신청 개인 (단체) 부적격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중 '공고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이 가능한 예술인은 신청 가능 • 국립·공립(시·도)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신청 주체인 공공 공연장은 예외 • 정부·지자체, 국·공립,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위 단체에 소속된 개인의 경우, 해당 소속단체의 사업이 아닐 시 '개인'으로 지원 가능 • 학교·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소속·운영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 ※ 대학원생은 신청 가능 ※ 단, 대학(교) 전 학기 이수한 졸업유예자 지원 가능(졸업예정증명서 등 증빙자료 필수 제출)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신청 접수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단체 • 2023년에 지원사업을 포기한 개인·단체 ※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개인·단체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개인·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개인·단체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졸업작품 및 학위청구 관련 발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참가비(출품료)를 받는 사업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활동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 • 사업 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타 지원사업 선정사업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행정심의에서 탈락처리 및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알림 • 심의 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접수) 및 제출 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교부,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 사업별 공모내용(신청자격, 대상사업,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을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상경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내용이 과도하게 변경, 축소되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원신청단체에 없는 경우 지원신청 당시 원작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전에 공지된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 외 별도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필수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심의 배제됩니다. 제출 전 심의배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지정양식 준수 필수/총용량은 최대 100MB까지 첨부 가능 • 첨부파일(URL링크, 영상, 음원파일 등)이 최종 제출하는 지원신청서 내에서 열리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십시오.
기타 안내 사항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차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예산편성 안내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함
  ※ 단, 일부 사업유형은 운영경비 지원 가능
- 교부 신청 전 집행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단, 심의기간 중 진행되는 사전사업에 대해서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교부 신청 시 사례비 예산 항목 신설 불가 및 지원신청 당시의 사례비(출연료, 원고료, 창작활동비 등) 예산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 지원사업 예산편성 내용

세목	항목	세부 내용
일반수용비	사례비	출연, 기획, 연출, 평론 등 개인 사례비 ※ 원천세를 포함하여 세전 금액으로 편성
		(개인) 선정자 본인의 사례비를 총 지원금 1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책정 및 집행 가능합니다. **※ 차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행 필수** (단체) 대표자 사례비의 경우 총 지원금 20% 이내에서 책정 및 집행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 및 고유번호단체('소득세법'에 따라 대표자의 개인경비처리가 가능한 단체)만 편성이 가능하며, 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출연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제작, 디자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
	제작비	무대, 세트 등 제작
	재료비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
	발간비	도록, 서적 발간 등
	기타 운영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작품, 악기 운송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료 등
임차료	대관료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부대시설, 연습실 대관료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연습실 대관료 편성불가
	임차료	장비, 물품, SW(소프트웨어) 등의 임차료 ※ 사업기간 외 장비, SW 임차 시, 비용 불인정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지원신청 시에는 편성하지 않고, 선정 이후 편성

사용불가 항목	세부 내용
일상적인 운영경비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용역비	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재위탁하는 방식의 용역비 ※ 단체 출연료(세금계산서 발행)는 용역비로 인정
자본적 경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사업추진비	출연진 식대, 다과비, 업무추진비 성격의 식대, 행사기념품 구입비 등
행사 답사비 등 비용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재교부 사업 관련 경비	상금, 상금 심사비 등

기타 사항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각종 수수료(인증서발급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이의신청 제도 안내

- 운영 기간 : 심의발표일로부터~10일
- 접수 방법 : 양식 작성 후 e-mail을 통한 접수(접수 양식, e-mail 주소는 심의결과발표 시 공지)
- 운영 내용 : 이의 제기 시 신청 내용에 대한 행정지원

예술활동지원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장애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지원

지원 대상

2024. 12. 31.까지 창작 작품 발표가 가능한 분야별 사업

전년도와 달라진 점

	2023 이전	2024
지원 신청 자격	개인과 단체지원	장애예술창작자 중심지원 ※단체의 경우 장애예술인이 예술활동 주체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지원 신청 자격

개인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장애 예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증빙)

단체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며, 단체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단체 구성원 또는 프로젝트 참여자의 30%이상이 장애인인 관련 분야 예술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증빙 필수)

※ 장애예술인이 창작자로 참여하는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

※ 장애인 대상 복지프로그램 또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불가

지원 항목

분야	내용
문학	• 문학작품 창작 및 발간 지원 또는 비영리 문학단체가 국내에서 발간하는 문예지(문학지)의 원고료 및 인쇄 출판에 필요한 직접 경비 • 문학 활성화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추진 시 직접 경비
시각예술	• 전시 기획 및 구현 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공연예술	• 공연 제작, 발표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다원예술	• 프로젝트 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세부 분야

분야	내용
문학	• 문학작품 창작 및 발간 활동, 문학 행사 지원 –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수필, 희곡, 평론
시각예술	• 시각 예술분야 전시, 행사 활동 지원 – 한국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설치, 디자인, 미디어, 사진, 건축
공연예술	• 연극 : 창작극, 번역극, 넌버벌·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음악 : 성악, 합창,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기악, 작곡, 대중음악 등 • 전통예술 : 전통연희, 국악, 전통무용, 전통민속, 창작국악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무용극 등
다원예술	• 분야간(문학, 연극, 음악, 전통, 무용, 시각예술) 크로스오버 또는 콜라보레이션

지원 규모

구분	지원규모
개인	500만원(정액)
단체	최대 2,000만원

필수 제출자료

문학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용</th></tr>
<tr><td>개인</td><td>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2024년도 발간 예정 미발표 원고 *분량제한 없음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제출 편수</th></tr>
<tr><td colspan="2">시, 시조, 동시</td><td>10편</td></tr>
<tr><td rowspan="2">소설</td><td>단편</td><td>2편</td></tr>
<tr><td>중/장편</td><td>1편</td></tr>
<tr><td rowspan="2">동화</td><td>단편</td><td>2편</td></tr>
<tr><td>중/장편</td><td>1편</td></tr>
<tr><td colspan="2">수필</td><td>3편</td></tr>
<tr><td colspan="2">희곡</td><td>2편</td></tr>
<tr><td colspan="2">평론</td><td>2편</td></tr>
</table></td></tr>
<tr><td>단체</td><td>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td></tr>
</table>

시각예술

구분	세부내용
개인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② 포트폴리오(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기존 작품 및 2024년도 전시 예정 작품 10점
단체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공연예술

구분	내용
개인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② 사업 수행 역량 심의를 위한 분야별 제출자료 – 연극, 무용 : 영상 – 음악, 전통예술 : 영상 또는 음악 / 작곡의 경우 악보로 대체 가능 ※ 영상 파일형식 : avi, wmv / 음원 파일형식 : mp3, wav / URL 링크
단체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영상 파일형식 : avi, wmv / 음원 파일형식 : mp3, wav / URL 링크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다원예술

구분	내용
개인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② 포트폴리오(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단체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영상 파일형식 : avi, wmv / 음원 파일형식 : mp3, wav / URL 링크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심의 기준

① 문학(개인)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작품의 창의성/완성도	60	• 작품의 성격과 내용은 창의적인가? • 작품은 문학적으로 완성도가 높은가?
사업 수행역량	20	• 작가는 작품을 발간할 역량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충실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기대되는 성과	20	• 지역문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가? • 발간 작품이 독자나 다른 작가에게 영향력이 미치며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② 문학(단체)/시각예술/공연예술/다원예술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수행역량	20	• 신청 예술 단체는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창작활동에 대한 내용과 표현방식이 명확한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장애 예술인·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 지원

※ 지원신청자격, 사업 수행역량, 예술성, 기대되는 성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

심의 절차

① 개인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서류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	작품, 포트폴리오 심의	➡	지원신청서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문학, 시각)작품, 포트폴리오 블라인드 심의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및 지원 결정

② 단체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	지원신청서 심의	➡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지원금 의결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 점수 산술

※ 2023년 지원 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3점 ~ -2점)를 합산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마이페이지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 문학 : 실명을 기재하거나 제출작품 원고 편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

국제예술교류지원

예술인(단체)의 창작·발표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국외 교류활동 지원

지원 대상

- 2024.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공신력 있는 국외 기관, 단체와 공동 제작 및 발표
- 국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
- 국외에서 개최하는 예술사업 참가(공연, 전시, 세미나, 비엔날레, 축제 등)

*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해외 예술가, 단체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사업(국내 거주 해외 국적자 제외)
  - 친목, 단순 초청성 교류 행사
  - 해외 교민 대상 위문 공연 형태의 사업 등

전년도와 달라진 점

	2023 이전	2024
지원 대상	IN-OUTBOUND 모두 지원 신청 가능	OUTBOUND 중심지원 ※INBOUND형은 예술창작활동지원(1차)으로 지원가능

지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지원 항목

● 국제예술교류사업 진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 항공비(운송비), 숙박비, 행사홍보비, 사례비, 장소대관료, 임차료, 통·번역비, 국외여비(항공료, 현지숙박비, 교통비) 참가비용

① 국내여비	- 국내 도시 간 항공료(제주-사업 파트너간 국가(도시)간 직항 노선이 없을 경우)
② 국외여비	- 항공료 : 한국-사업 파트너 간 국가(도시)간 국제 항공료(※ 이코노미석 기준) - 숙박비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현지 숙박비(현지에서 사용되는 식비 예산편성 불가) - 현지교통비 : 현지 체류기간 중 교통비

- 신청사업의 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결정
- 단체운영·경상경비는 지원불가

※ 법인단체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가능

세부 분야

문학,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 규모

구분	지원 규모
개인	1,200만원(정액)
단체	최대 3,000만원

필수 제출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단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③ 초청(교류) 단체의 연혁

④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내용이 명기된 초청(교류) 기관이 작성한 사업 기술서

⑤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어로 되어있는 문서의 경우, 번역본 필수 제출

심의 절차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인터뷰 심의	4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발표/인터뷰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결정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2023년 지원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 ~ -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예술성/충실성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신청사업의 해외 파트너는 해당 교류 사업에 적합하고 신뢰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파급효과를 기대할 만한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국내아트페어 참가지원

예술작품 유통활성화를 위한 국내 아트페어 참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내 아트페어에 참가 예정인 도내 단체
  - (필수) 사업 참여작가의 2/3 이상이 제주작가로 구성·참가
  ※ 제주작가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예술활동 하는 자, 선정 후 초본제출
  ※ 도내 청년, 신진작가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 부여 (1인당 1점, 최대 5점)
- 신진작가 기준 : 개인전 3회 이하, 대관전 제외 **(포트폴리오 필수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미부여**

지원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예술단체

지원 항목

- 국내 아트페어 참가 운영 경비
  - 필수 : 작품 운송료, 보험료, 액자 제작비, 부스 임차료
  - 선택 : 아트페어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 경비
  ※ 단, 신청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트페어 및 도내 아트페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범위(2,000만원) 내 다수 아트페어 지원가능

지원 규모

2,000만원(정액)

필수 제출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② 출품 작가의 작품 이미지(포트폴리오/*지정서식 사용)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본**

※ 상기 증빙서류 미제출 시 행정심의 배제

- 아트페어 참가 확정인 경우 전시가이드(참가규정) 및 참가확인서(참가신청서) 등 기타 심의자료로 제출
- **신진작가 가점은 해당 작가 포트폴리오 제출하는 경우에만 부여**

④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심의 절차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인터뷰 심의	4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발표/인터뷰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결정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2023년 지원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 ~ -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평가지표
계		100	
계획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35	• 사업목적의 이해도 및 부합성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 일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실행단계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신청단체의 전문성 및 활동실적 • 신청단체의 사업추진 및 실현 능력 여부 •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합리성
성과단계	사업성과 기대도	35	• 신청 아트페어의 국내 영향력에 따른 도내미술의 홍보 및 파급력 정도 • 해당 사업의 부스 규모에 따른 제주미술의 국내 홍보 효과 • 도내 작가 국내 미술시장 접근성 향상 기여도
※ 도내 청년, 신진작가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 부여(최대 5점, 1인당 1점) * 신진작가 기준 : 개인전 3회 이하, 대관전 제외			

의무사항

- 모든 홍보/인쇄물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명 및 로고 포함(후원으로 명기)
- (교부신청시) 해당 아트페어 전시가이드(참가규정) 및 참가확인서(참가신청서) 등 확인자료 제출
- (실적보고시)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실적(제출작품/판매작품/총 판매금액) 제출 필수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예술창작기반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 지원

지역 문화예술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에 대한 연구 및 비평지원

지원 대상

- 2024.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예술비평(문학, 시각, 공연예술분야) 관련 활동(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비평활동 포함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학위논문집, 에세이, 교습서, 번역본 등 연구작업이 동반되지 않는 단순 작품집, 다수 연구자 저술 모음집
  - 비평전문지가 아닌 일반적인 미술잡지 발간
  - 단체 회보 성격의 발간물(협회지) 및 연례 학술 행사
  - 전작도록, 전시도록 등 화집 발간
  - 디지털 매체를 통한 단순 사업홍보활동, 단순 감상문, 타인의 비평문을 단순 게재하는 활동
  - 문화예술 연구의 범주를 벗어난 단순 연구 자료집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문화예술 연구·평론이 가능한 예술인
-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관련분야 문화예술 연구·평론이 가능한 예술단체
- 개인 신청인 경우 2인 공동연구, 집필 신청 가능
  (단, 대표 1인의 명의로 신청하되 신청서류에 반드시 공동연구와 집필자 정보 명기)

지원 항목

- 비평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 단체의 운영·경상경비는 지원불가
    ※ 법인단체 대표자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이내 편성 가능

세부 분야

문화예술분야 연구, 비평, 학술

지원 규모

800만원(정액)

필수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단체)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심의 절차

1차 행정 심의		2차 서류 심의		3차 심의
신청 자격 및 필수 제출자료 확인	➡	지원신청서 심의	➡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자료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지원 결정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2023년 지원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 ~ -2점)를 합산

심의 기준

심의지표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2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업의 충실성	3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가? • 예산의 세부항목과 금액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역량	30	• 신청 예술인(단체)은 신청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사업 참여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기대되는 성과	20	• 문화예술 연구 및 평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역예술계 담론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예술공간기반지원

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예술공간의 운영 목적이 뚜렷하고,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2024.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 예술인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발표(전시, 공연) 등)
- 지역 예술인, 기획자 등 다양한 영역과의 교류 및 협업 프로그램
- 사업 수행 중 전문가 인터뷰, 컨설팅,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업
- 예술을 기반으로 도민과 접점을 확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신청 자격

- 제주 소재 예술 단체 및 기초예술 창작 공간

지원 항목

구분	지원항목
공통	• 예술 공간 특성화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법인 단체 대표자 사례비(직접적인 활동(기획, 연출 등)을 한 경우)는 총 지원금의 20% 이내 편성 가능
창작공간 프로그램지원	• 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필요한 아티스트피(월 60만원 이내) ※ 아티스트피를 지급받은 예술인은 추가 다른명목의 사례비 책정 및 지급 불가
편성불가항목	• 선정 단체 및 공간 외의 운영·경상경비 • 공간의 구입, 임대, 신축 및 개보수 경비 • 고정자산 취득 및 경직성 경비 • 간담회비, 식비, 다과비 등 업무추진비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항목

지원 규모

3,000만원(정액)

필수 제출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공간 현황 및 시설 임차·소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증빙자료
※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법적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②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	4차 심의
신청자격 및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 발표 및 인터뷰 / 담당자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결정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2023년 지원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3점 ~ -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주요 심의내용
지원목적의 적합성	1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10	• ESG가치 기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가? (일회용품 자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사회적 약자의 관람환경 조성 등) •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의 충실성/ 기획력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목표와 수준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운영 역량	30	• 사업을 수행할 예술적 역량이 있는가? •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내용과 시각의 차별성과 실행력이 있는가? • 사업 참여 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 공간의 시설과 규모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절한가?
기대되는 성과	10	•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공간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공간의 자생력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문화예술 거점 공간 프로그램 지원 (구 ㄱ치:가치 프로젝트)

지원 대상

- 2024. 12. 31.까지 완료가 가능한 사업

지원 목적

- **도내 권역별 문화예술공간 중심의 지역문화 상생프로그램 지원**

전년도와 달라진 점

구분	2023 이전 ㄱ치:가치 프로젝트	2024 문화예술 거점공간 지원
필수사항 변경	2개 이상 참여(공간, 단체) 컨소시움 구성 필수	컨소시움 의무 해제
지원가능 문화공간 변경	영리목적의 문화공간 가능 ※ 민간 문화공간 : 독립서점, 전시·공연 공간, 복합 문화공간(카페+갤러리), 문화커뮤니티공간 등	비영리 문화예술공간에 한하여 가능 ※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공간의 경우 제외 (문화공간일지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일 경우 불가능)
지원분야 명확화	해당 지역의 지역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기획프로젝트 (세부 장르 무관)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 단, 프로젝트는 반드시 해당 문화예술공간이 모두 소재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원 자격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도내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공간
  - 문화예술공간 활동 증빙 : 지난 1년간 2회 이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증빙 필수
- 공간 대관 형식의 지원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주제가 문화공간 대표이어야 함

구분	권역구분
제주권역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권역	서귀포시 동지역
동부권역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서부권역	대정읍, 안덕면,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추자면

지원 규모

건당 2,000만원(정액)

지원 항목

프로그램(축제, 커뮤니티 아트, 전시 및 공연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직접 경비

※ [필수] 해당권역의 지역성을 소재나 주제로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담아야함

지원 분야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다원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프로그램

필수 제출 자료

① (필수)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 [서식1] 신청서
- [서식2] 사업계획서 *인터뷰 발표자료는 계획서 기준으로 PPT 작성 → 추후 추가 안내 예정
- [서식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공간을 소재지로 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서식4] 문화예술공간 활동 증빙자료 (활동내역)
-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② (선택) 문화예술공간/기획자 포트폴리오(자유형식)
- [자유양식] 포트폴리오(문화 기획 및 운영 활동 자료)

③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자유양식, 5분 이내 발표)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	4차 심의
신청자격 및 필수제출서류 확인	지원신청서 심의	PT 발표 및 인터뷰 / 담당자 현장실사	전문가 종합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탈락	심의 기준에 따른 서류 심의	사업내용을 PT발표하고 심의 기준에 따른 인터뷰 심의	지원 결정

※ 심의위원회 5인 이상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

※ 2023년 지원사업자가 2024년에 지원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 심의 결과에 전년도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 (+3점 ~ -2점)를 합산

※ 서류 심의를 통해 인터뷰 심의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인터뷰 대상자는 개별 연락 예정

심의 기준

심사항목	배점	심사기준
지원목적의 적합성	10	• 지원사업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는가? • 사업계획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	10	• ESG가치 기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가? (일회용품 자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사회적 약자의 관람환경 조성 등) •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의 충실성/기획력	40	• 사업계획은 주제가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 목표와 수준이 적절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사업내용이 얼마나 독창적이며 기획력이 있는가? • 예산은 사업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
사업 수행 역량	30	• 사업을 수행할 역량이 있는가? • 프로그램에 대한 예술적 내용과 시각의 차별성과 실행력이 있는가? • 사업 참여 인력의 역량과 사업실적, 경력이 사업을 수행할 만한가? • 다양한 주체(공간, 문화인력, 예술가, 지역주민 등)와 연계하며, 협업하는 모델인가?
기대되는 성과	10	• 참여자, 그리고 마을에 의미 있는 변화(문화향유 등)를 만들 수 있는가? • 공간의 자생력과 성장 기반을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예술인복지지원

제주장애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제주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을 위한 준비금 지원

지원 신청 자격

-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장애예술인
  - (주소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장애예술인
  - (예술활동실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장애예술인

세부 분야

문학, 시각예술(미술, 서예, 사진), 공연예술(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지원 규모

창작준비지원금 1인당 월1,000,000원, 10개월간 지원

필수 제출자료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1부

② 주민등록초본 1부(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신청인의 제주특별자치도 1년 거주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돼야 함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지원신청서 내 지정서식) 1부

④ 예술인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원신청서 내 지정서식) 1부

⑤ 2022년 기준 소득금액 증명서류 일체(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연금소득자용 해당 건 일체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 증명(신고사실 없음) 서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⑥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⑦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확약서(지정서식) 1부

⑧ 장애인 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⑨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통장) 1부

참여 제한

구분	참여제한
예술활동 증명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및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잔여 유효기간이 공고일 현재 3개월 미만
연령제한	• 19세 미만 예술인
중복참여	• 2024년 제주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 개인 선정자(통합공모 1·2차) • 2024년 제주예술인 창작준비금 선정자(하반기 별도 공모 예정) •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창작디딤돌, 창작씨앗) 선정자 •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파견지원 선정자 • 2022년, 2023년 – 제주장애예술인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연속 선정자 (3개년도 연속 지원 불가)
기타사항	• 2024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지원신청 부적격' 대상 예술인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심의(소득)		3차 서류심의(창작활동)
신청자격 및 필수제출서류 확인	➡	지원신청서 심의	➡	지원신청서 심의
지원 부적격자 및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시 탈락		소득기준 심의 (30%)		창작활동계획서 심의 (70%)

심의 기준

예술활동계획(70%) + 소득(30%)

<table>
<tr><th>심의지표</th><th></th><th>가중치</th><th>주요 심의내용</th></tr>
<tr><td rowspan="3">예술활동계획
(70%)</td><td>지원목적의
적합성</td><td>30</td><td>• 활동계획서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와 수준은 적절한가?</td></tr>
<tr><td>사업의 충실성</td><td>50</td><td>• 활동계획서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준비과정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td></tr>
<tr><td>기대되는 성과</td><td>20</td><td>•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예술적 성과가 명확한가?
• 예술인으로서 자생적 활동 기반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만한가?</td></tr>
<tr><td>기준소득
(30%)</td><td>소득</td><td>100</td><td>•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table>
<tr><th>기준 중위소득</th><th>점수</th></tr>
<tr><td>50%이하</td><td>100</td></tr>
<tr><td>50%초과~70%이하</td><td>90</td></tr>
<tr><td>70%초과~90%이하</td><td>80</td></tr>
<tr><td>90%초과~120%이하</td><td>70</td></tr>
<tr><td>120%초과</td><td>60</td></tr>
</table>
• 2023년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1호)
(단위 : 원/월)
<table>
<tr><th>기준 중위소득</th><th>점수</th></tr>
<tr><td>50%</td><td>1,114,223</td></tr>
<tr><td>70%</td><td>1,559,912</td></tr>
<tr><td>90%</td><td>2,005,601</td></tr>
<tr><td>100%</td><td>2,228,445</td></tr>
<tr><td>110%</td><td>2,451,290</td></tr>
<tr><td>120%</td><td>2,674,134</td></tr>
</table></td></tr>
</table>

지원 신청 자격

- 선정자는 매 월 교부되는 지원금에 따른 활동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음
- 보고서 제출 지연시 다음달 지원금 교부가 지연됨
- 재단의 모니터링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청년지원

청년예술인 해외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공신력있는 국외기관의 초청 또는 선정에 의한 예술활동 및 예술인(또는 단체)간 공통 창작, 협력, 제작 활동**
  ※ 단, 개인·친목 단체의 초청행사는 지원 불가

지원 신청 자격

- **(개인)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39세(1984. 1. 1. 이후 출생) 이하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 예술인 및 기획자
  -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또는 제주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4건 이상인 청년 예술인 및 기획자
- **(단체)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대표자가 39세(1984. 1. 1. 이후 출생) 이하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관련 분야 예술단체
  - 사업 참여자의 100%가 39세(1984. 1. 1. 이후 출생) 이하

  ※ 프로젝트 팀 지원 시, 구성원의 100%가 개인 자원가격을 충족해야 하며, 대표의 개인 NCAS 아이디로 지원신청

  ※ 프로젝트 팀이란? 2인 이상이 참여하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팀

지원 항목

창작·협력·제작 활동 시 소요되는 직접 경비 지원

* 항공료, 숙박비, 실비지원

  ※ 왕복 항공료-이코노미 기준

세부 분야

분야	내용
문학	• 시, 시조, 동시, 소설, 동화, 수필, 희곡, 평론 등
시각예술	• 한국화, 서예, 문인화, 서양화, 판화, 조각, 공예, 설치, 디자인, 미디어, 사진, 건축 등
공연예술	• 연극 : 창작극, 번역극, 넌버벌·마임,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음악 : 성악, 합창, 오페라, 관현악, 실내악, 기악, 작곡, 대중음악 등 • 전통예술 : 전통연희, 국악, 전통무용, 전통민속, 창작국악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창작무용극 등
다원예술	• 융·복합형, 실험, 복합, 기타

지원 규모

500만원 ~ 최대1,500만원

필수 제출자료

개인

① 온라인 지원신청서 1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③ 포트폴리오(자유형식) 또는 예술활동증명
※ 예술활동증명 미제출 시 데뷔 후 제주 활동 문화예술경력이 4건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④ 초청(교류) 단체의 연혁
⑤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내용이 명기된 초청(교류) 기관이 작성한 사업 기술서
⑥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어로 되어있는 문서의 경우, 번역본 필수 제출

단체

① 온라인 지원신청서 1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
② 지원신청서(지정서식 다운로드 : 재단 홈페이지)
③ 대표자 및 사업 참여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④ 초청(교류) 단체의 연혁
⑤ 초청(교류) 단체 및 기관과의 교류내용이 명기된 초청(교류) 기관이 작성한 사업 기술서
⑥ 사업 추진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외국어로 되어있는 문서의 경우, 번역본 필수 제출

심의 절차

행정심의		서류+인터뷰심의		선정자 발표		지원금 교부
신청자격 및 필수제출서류 확인	➡	전문가 서류 +인터뷰 심의	➡	재단 홈페이지 공고	➡	선정자(개인/단체) 교부 신청 및 교부

※ 행정심의 후 인터뷰심의 대상자에게 인터뷰심의 일정 안내 문자 예정

심의 기준

구분	기준	가중치	심의 내용
계획	구체성 적정성	20	- 신청서와 지원사업 목적의 부합성 - 발표하려는 작품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 예술인으로서 본인 작업에 대한 고민(탐구의식, 문제의식 등)과 예술적 비전(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의 구체성, 진정성
실행	예술성	30	- 성장 가능성, 잠재력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독창성
	수행역량	30	- 발표·결과물 추진 가능한 역량(운영 사례·성과 기반) - 작품 활동 목적 부합도·충실도 - 활동 계획의 현실성·연계성
성과	기대 성과	20	- 청년 예술인으로서 기대되는 예술적 성취도 -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및 도내 청년예술계에 파급효과를 기대할만한가?

의무사항

① 재단이 진행하는 평가,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기록 영상 촬영, 성과공유회 참석 등 협조

② 선정 사업 관련 홍보·발간물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후원 로고를 표기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보조금 관리 등 관련 규정을 사전 숙지 및 준수

④ 제주인놀다(https://www.jejunolda.com/), 아트노크(artknock.kr) 홈페이지 가입 및 행사 정보 업로드

⑤ 프로젝트 진행 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의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필수

⑥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결과 보고

※ 의무사항 불이행 시 추후 재단 지원사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2024

제주문화예술재단
통합공모

2차 안내

문화예술
교육지원

2024 주요 개선사항

빈틈없는 지원,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기반 마련

도민 누구나 일상 속 함께 누리고 서로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하여 202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설계했습니다.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문화예술교육 현장 라운드테이블(3회) →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 담당자 모니터링 (7개 사업 총 66건) → 개선방향 도출 및 실제 적용

정책 변화와 현장 및 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3개 분야 개선방향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개선방향

구분	추진방향	주요 개선안
정책	문화예술교육 기초 단위 확산 및 빈틈없는 지원	•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신설, 추진목적에 따른 지원사업 유형화 •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꿈다락) 읍, 면 지역 아동센터 운영 및 (장애인) 시설+예술단체 컨소시엄 운영 지원
현장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기반 마련	•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부 사업 간 중복 지원 불가 • 역량 강화 활동비 증액 및 행정인력 인건비 편성, 보조인력 사용 일수 확대 및 생활임금 적용 • 정산절차 간소화를 위한 회계검사 전면 폐지
도민	일상 속 함께 누리고 서로 공감하는 문화예술교육 향유	• 조기 공모 실시로 교육 시작 시기 당김 • 세대/계층 간 통합 및 사회문제를 함께 인지하고 실험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유형 추가

주요 개선 내용

구분	내용	기존	개선
정책·제도	공모 시기 당김	당해년도 1월~2월 추진	직전년도 12월 추진 - 심의 및 선정도 빨라짐에 따라 교육 시작 시기 당김
	지원 목적에 따른 사업 유형 구분 및 공모 시기 구분	-	1. 대상맞춤형 2. 거점지원형 3. 연구실험형
	사업 운영 가이드 사전 배포	공모 시 예산편성·집행 기준만 공지, 선정 이후 가이드 배포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사업 운영 가이드 배포
	일부 사업 사업 간 중복 지원 제한	사업유형 관계없이 최대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	아래 사업 간 중복 지원 불가 -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 사업 신설	-	동부권/서부권 지역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시설 대상 거점 조성을 위한 2개년 지원사업 추진 - 1년차 연구, 개발/2년차 실행, 확산 - 권역별 2~3개 단체 컨소시엄으로 사업 신청
	세부 사업 유형 구분 및 운영 조건 강화	-	(유아) 사업 유형 구분 ① 연구형, ② 일반형 - ① 연구형의 경우 프로그램 연구 개발+실행 지원
		-	(꿈다락) 최소 1기수 읍, 면 지역 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 내 프로그램 운영 필수
		문화예술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장애인 시설 및 기관, 단체 지원	(장애인) 사업 유형 구분 ① 기반형 - 장애인 시설+문화예술교육단체 컨소시엄 지원 ② 모집형 - 문화예술교육단체 지원
	회계검사 폐지	지원금 1,000만원 이상 회계검사 진행	지원금액 상관없이 전면 폐지

구분	내용	기존	개선
사업 운영	교육 운영 회차 및 인원 최소 기준 마련	(교육회차) 지원사업별로 상이 (교육인원) 기준 없음	(교육회차) 최소 12회차 이상 운영, 운영 기간 10주 이상 유지 (교육인원) 15명 이상 ※ 유아/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기준 상이
	참여 인력 최소 기준 마련	별도 기준 없음	(주강사) 최대 2명 (보조강사) 최대 2명 ※ 유아/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제외
	행정인력 인건비 편성 및 기획자 역할 명확화	기획자 프로그램 기획, 교육 활동 기록 및 정산 업무까지 담당 - 회차당 최대 12만원 지급	(기획자)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 - 회차당 7만원 정액 지급 (행정인력) 교육 활동 기록 및 정산 업무 담당 - 회차당 5만원 정액 지급 ※ 기획자, 행정인력 중복 가능 ※ 기획자, 주강사 중복 불가
	보조인력 사용 일수 확대	연간 최대 10일	연간 최대 30일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편성 기준 명확화	별도 기준 없음	(인건비) 지원금 50% 이내 ※ 연구사업의 경우 60% 이내 (역량강화 활동비) 최대 10% 이내 (임차비) 지원금 10% 이내 ※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20% 이내 (용역비) 지원금 20% 이내 (사업추진비) 지원금 10% 이내
	보조인력 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지급	제주도 생활임금 지급
	역량강화 활동 지원 확대	최대 100만 내 편성	지원금 최대 10% 이내 편성

2024 통합공모 2차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대상사업 목록

대분류	소분류	유형	지원목적	신청주체		지원장르							지원규모
				개인	단체	문학	시각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다원	
문화예술 교육지원	연구 실험형 트랙	첫 문화예술교육 지원	신규 인력을 발굴,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	●	●	●	●	●	●	●	●	●	지원금 최대 5백만원 ※ 별도 기획비 1백만원 지원
		주제연구 활동 연구 지원	도내 문화예술교육 매개자 간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사회문제를 실험하는 학습 공동체 활동 지원		●	●	●	●	●	●	●	●	팀별 5백 ~1천만원

※ 별도 공모 공지 사업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강화 지원사업

유의사항

지원자 책임 신청제

- “지원자 책임신청제”는 지원신청 시에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단체가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및 단체의 지원 신청 내용을 신뢰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자료제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 확인을 위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마이페이지 〉 내 회원정보’를 작성하고 최신 정보로 수정 바랍니다.

지원자 의무사항

- 사업 참여 인력의 인권 보호 의무
-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
- 지적재산권, 저작권, 초상권 보호
-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 선정 이후 교부 신청 시 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수강 의무
  ※ 사업 참여 인력 전원 ‘예술인 권익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서약서 제출
- 주최, 주관, 후원 표기 및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제주인놀다’ 운영 프로그램 등록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운영 가이드’에 따른 사업 수행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단체 대상으로 하는 역량강화 및 워크숍 라운드테블,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전문가 모니터링 및 컨설팅, 담당자 모니터링 및 행정평가 등) 협조

중복신청 및 중복선정 관련 안내

타 부서 사업 간

사업	중복신청	중복 선정	유형
문화예술교육지원	X	X	예술공간 기반지원
	○	○	그 밖의 예술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그 밖의 예술지원 간 중복 신청 및 중복 선정이 가능하나 사업 추진 내용은 달라야 함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간

구분 (트랙)	대상맞춤형 트랙				거점지원형 트랙		연구실험형 트랙	
	1차 공모					3차 공모	2차 공모	
	유아 문화 예술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꿈다락 문화예술 학교	전 생애 문화예술 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 거점 지원사업	문화예술 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지원사업	첫 문화 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주제연구 활동 지원사업
중복 지원	–	–	1개 사업만 공모 지원 가능				–	–
	그 외, 사업 주체별(단체·시설) 최대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사업 및 부적격 시 처리 방법

지원신청 부적격 기준	• 국립·공립(시·도)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정부·지자체, 국·공립,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국고·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학교·종교기관, 친교기관 등 소속· 운영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 단체 •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휴학생/대학원생 • 상업적 목적이 큰 영리법인(예, 주식회사)
과거 지원금 수혜 경력 관련 부적격 기준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개인·단체 •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납 통보를 받고 신청접수 기한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 신청 접수 기한까지 전년도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관련 규정, 법률 및 지침 위반행위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단,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성희롱·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자가 포한된 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금 관리규정」 제7조제5항) • 지원 신청 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형 집행 중인 단체 • 공금횡령 또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관련된 단체
사업목적 및 내용 부적격 기준	• 단체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경연대회, 공모사업[시상금, 상금 심사비, 상품(권) 지급 불가] • 지원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영리 목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수행 인원 중 50% 이상이 초·중·고·대학생으로 구성된 사업 •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업 • 타 지원사업 선정사업

예산 부적격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받는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 및 제주시, 서귀포시 직접 지원 사업 ※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응모 시 처리 방법	• 행정심의에서 탈락처리 및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알림 • 심의 의결 후 지원 제외 및 제한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지원신청(접수) 및 제출 안내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교부, 정산 및 성과보고 등 사업의 전 단계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지원신청자는 반드시 지원 사업별 공모내용(신청자격, 대상사업, 제출자료, 제출방법 등)을 확인 후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서에 개인 및 단체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의 운영·경상경비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 선정 이후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사업내용의 과도하게 변경, 축소되는 경우 보조금이 취소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사전에 공지된 제출서류(지원신청서 등) 외 별도 첨부하는 자료는 심의 시 검토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필수제출서류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심의 배제됩니다. ※ 제출 전 심의배제 사항 등을 점검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자 활동실적 증빙서류가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제출자료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신청 시 반드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지정양식 준수 필수/총용량은 최대 100MB까지 첨부 가능
기타 안내 사항	•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으니, 지원신청서 제출 시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차순위 후보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

<table>
<tr><th>목</th><th>세</th><th>세세목</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운영비
(210)</td><td>일반
수용비
(01)</td><td></td><td><u>인건비 전체 사업비의 50% 이내 편성</u>
※ 연구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60% 이내 편성
– 해당사업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연구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연구형)
※ 인건비 해당 항목
– 기획자, 주강사 및 보조강사, 연구활동비, 초빙 강사료, 자문료, 보조인력</td><td>공통
사항</td></tr>
<tr><td></td><td></td><td>기획자</td><td>● 기획자 : 교육프로그램 회차당 70,000원 정액 지급
※ ‘첫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기획비가 정액으로 별도 지급되므로 편성 불가
※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 중 연구형은 기획자 인건비 편성 불가</td><td>공통
사항</td></tr>
<tr><td></td><td></td><td>강사비</td><td>● 주강사 시간당 60,000원 / 보조강사 시간당 40,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회차당 1시간 이내로 교육 운영 준비시간에 대해 인정
(교육일지 작성 시 준비시간 활동내역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필요)
※ 현장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일 최대 5시간까지 책정 가능
– 2시간 초과 이후부터는 기존 시간당 50%의 강사비 책정
[예시(표)] 수업 시간별 주강사/보조강사 강사비
<table>
<tr><th>시간</th><th>주강사</th><th>보조강사</th><th>책정기준</th></tr>
<tr><td>1시간</td><td>60,000원</td><td>40,000원</td><td rowspan="2">2시간까지 시간당
주강사 60,000원 / 보조강사 40,000원</td></tr>
<tr><td>2시간</td><td>120,000원</td><td>80,000원</td></tr>
<tr><td>3시간</td><td>150,000원</td><td>100,000원</td><td>2시간 초과 후 시간당
주강사 30,000원 / 20,000원</td></tr>
</table>
● 수업 1회차당 주강사/보조강사 각각 최대 2명까지 배치 가능(유아/장애인 제외)
● 강사비 지급 시 사례비 수령확인서(강사 인적사항, 교육일자, 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필수이며, 강사 개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원칙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동일인에게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특강 강사 초빙 시 해당 회차의 주강사는 보조강사비로 책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중 연구형은 강사비 편성불가</td><td>공통
사항</td></tr>
</table>

<table>
<tr><th>목</th><th>세</th><th>세세목</th><th>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3">운영비
(210)</td><td rowspan="3">일반
수용비
(01)</td><td>연구
활동비</td><td>● 연구활동비
– 해당사업 :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연구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원사업,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연구형)
<table><tr><th>구분</th><th>경력기준</th><th>최대 지급기준</th><th>최대 개월수</th></tr><tr><td>책임연구원</td><td>예술교육분야 12년 이상</td><td>월 3,662,585원</td><td rowspan="3">4개월</td></tr><tr><td>연구원</td><td>예술교육분야 7년 이상</td><td>월 2,777,750원</td></tr><tr><td>보조 연구원</td><td>예술교육분야 3년 미만</td><td>월 1,856,832원</td></tr></table>※ 산출근거 : 2024 학술연구용역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 최대 지급기준 수당 산출은 학술용역단가 월 임금에서 <u>1개월(22일) 중 11일(50%)을 연구에 참여한 것</u>으로 하여 산출한 것으로 실제 연구 참여율에 따라 감액 가능
– 명확한 산출 근거와 이에 대한 증빙 제출 필수
● 연구 활동비 편성 시 증빙서류(연구결과 보고서 등) 필수 첨부
– 각 사업별 제출필수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업별 기준 확인
● 전체 예산 대비 적절한 편성하여 활용, 해당 연구 활동을 진행해야 함</td><td>해당
시</td></tr>
<tr><td>초빙
강사료
(연수 등)</td><td>●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20회차의 경우 20회차 × 10% = 2회차까지 특강강사 활용 가능
– 전체 회차에 10% 적용 시 소수점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 가능 [예시] 1.8회 → 2회
● <u>특강 강사 활용한 수업의 경우, 주강사는 보조강사로 역할 변경하여 수업 진행해야 함</u>
● 1일 및 1회차별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2시간 초과 시 초과된 시간부터는 1시간 기준 금액의 50%로 책정 및 지급
[예시] 2등급 강사 3시간 강의 시, 150,000원 × 2시간 + 75,000원 × 1시간 = 375,000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등급</th><th colspan="2">지급금액</th></tr><tr><th>~2시간까지</th><th>2시간 초과 시</th></tr><tr><td rowspan="3">강사료</td><td>1등급</td><td>250,000/시간</td><td>125,000/시간</td></tr><tr><td>2등급</td><td>150,000/시간</td><td>75,000/시간</td></tr><tr><td>3등급</td><td>100,000/시간</td><td>50,000/시간</td></tr></table>※ 1등급 : 강연, 자문 등 해당 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문가
2등급 : 강연, 자문 등 해당 분야 경력 10년 이상 전문가
3등급 : 강연, 자문 등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전문가</td><td>공통
사항</td></tr>
<tr><td>자문료</td><td>● 자문료 지급 관련
<table><tr><th>구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h>비고</th></tr><tr><td rowspan="3">자문료</td><td>1등급</td><td rowspan="2">200,000원</td><td rowspan="3">· 2시간 기준
· 2시간 이상 : 150%
· 5시간 이상 : 200%</td></tr><tr><td>2등급</td></tr><tr><td>3등급</td><td>100,000원</td></tr></table>–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기획자, 주강사, 보조강사,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등) 사례비 지급 불가
–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
※ 1~3등급은 강사료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td><td>공통
사항</td></tr>
</table>

<table>
<tr><th>목</th><th>세</th><th>세세목</th><th>내용</th><th>비고</th></tr>
<tr><td rowspan="4">운영비
(210)</td><td rowspan="4">일반
수용비
(01)</td><td>편곡 및
작곡
관련
규정</td><td>
<table>
<tr><th>구분</th><th>등급</th><th>지급금액</th><th>비고</th></tr>
<tr><td rowspan="3">편곡</td><td>1등급</td><td>500,000원/곡</td><td rowspan="3">* 30마디 이하의 곡, 편곡료에서 50% 차감 지급
* 80마디 이상의 곡, 편곡료에서 50% 추가 지급
* 재편곡, 재편성, 재구성의 경우 원 편곡의 1/2 만 지급</td></tr>
<tr><td>2등급</td><td>400,000원/곡</td></tr>
<tr><td>3등급</td><td>300,000원/곡</td></tr>
<tr><td>작곡</td><td colspan="3">작곡의 경우 전문가 수수료 규정과 관계없이 사안에 따라 별도의 기안을 득한 후 집행</td></tr>
<tr><td>감수료</td><td>등급
무관</td><td>50,000원</td><td>· 곡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500,000원을 지급함.</td></tr>
</table>
※ 1등급 : 국·내외 국립 교향악단 급 이상의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 및 클래식 음악가로서 국내에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15년 이상 경력의 작곡가
2등급 : 국내 시·구립 오케스트라 편곡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자
3등급 : 국내 음악대학, 민간 오케스트라 등 편곡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자</td><td>공통
사항</td></tr>
<tr><td>인쇄물
제작비</td><td>● 안내물, 홍보물, 자료집 등 '인쇄물 기준*'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의 제작비
● 인쇄물 기준*
– 팜플렛, 현수막, 포스터 등 사업,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에 따른 인쇄물
– 자료집 : 결과보고서, 책자, 사례집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쇄물
– 참여자 시혜성 물품(답례품 등) 및 단체 홍보 물품 제작 불가
● 단순 '인쇄 및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만 편성 가능하며, 디자인, 편집 등 인쇄 외의 작업을 포함한 제작의 경우 <u>일반용역비로 편성</u>
※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금액으로 집행하되, 비교견적 등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필요
※ 견적서에 상세 과업 등 산출기준 포함 및 2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 필수(2곳)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td><td>공통
사항</td></tr>
<tr><td>광고
선전비</td><td>● 오프라인 현수막 게재 또는 온라인 SNS 플랫폼 게시 등 광고 및 홍보 비용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수령 할 수 있는 곳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과다한 편성은 교부 시 조정될 수 있음</td><td>공통
사항</td></tr>
<tr><td>재료비</td><td>●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수업 재료 등의 물품 구입비
– 비소모성 물품으로, 자산취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 품목(악기 등)은 대여 권장, 이 경우, '임차비' 항목으로 책정 활용
– 예산책정 시 상세 산출내역 필수 작성 및 200만원 이상 비교 견적 2곳 필수</td><td>공통
사항</td></tr>
<tr><td>기타
진행비</td><td>● 교육 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비(교육 재료비 외 소모품)
● 프로그램 운영 시 안전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비
※ 집행 시 상세 산출내역 작성
※ 기타 진행비 내 사무용품, 소모품 구분하여 집행 교육 활동비성 물품(다과류) 등과 혼용하여 결제되지 않도록 유의
※ 200만원 이상 시 비교견적(2곳) 필수
※ 운영단체 및 내부인력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 거래 및 지급 불가</td><td>공통
사항</td></tr>
</table>

목	세	세세목	내용	비고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워크숍, 세미나, 포럼, 자문회의 등 행사 진행 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우편료, 택배 발송, 퀵서비스, 행사 보험료 등 – 택배비의 경우 통상적인 택배비가 아닌 해외배송, 대형물류 배송비 등은 교부 과정에서 집행 불가 처리 될 수 있음 – 배달앱 수수료(배달료 등) → 보조금 집행 금지항목으로 편성 불가	공통사항
	복리후생비	기관부담금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지원사업〉 유형에만 적용 – 재단과 사전 논의 집행	해당사업
	임차비 (07)	차량/장소/기자재	**임차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불가** ● 차량 임차 : 참여자 이동을 위한 임차에 한하며 실비 적용 – 현실 반영한 적정 금액을 집행하되, 비교 견적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 – 특히,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에서 참여자 대상으로 운영하는 차량 이용 경비는 센터에서 적절성 여부 판단하여 지원 – 안전 관리 차원에서 렌터카 임차보다 버스 대절 권고 ● 장소 임차 : 공공시설 이용 등 최소 비용 권장 ※ 학교시설, 정치 및 종교시설, 사설 학원 및 가정집 장소 임차 불가하며 그 외 교육장소로 적절치 않은 곳이라 판단된 장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음 ※ 매 회차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육장소 임차비 활용을 허용하되, 안전한 운영이 가능한 공간의 경우 임차비를 인정.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 (상시 교육활동 장소에 한함) – 카드 결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 기자재 임차 :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대여	공통사항
	일반용역비 (14)		**용역비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 편성 불가**	공통사항
		업체용역비	● 용역비 : 디자인 용역, 영상물 촬영 및 제작 용역 등 – DVD 추가 제작 등 단순 복제 작업 제외되며, 영상 제작물은 '파일' 형태로 제작 권고 **※ 견적서 내 상세 과업 및 산출내역 필수로 작성 및 제출** **※ 200만원 이상 비교견적(2곳) 제출 필수**	
		개인용역비	● 과업에 따른 일시적 사례비(디자인 용역, 영상물 촬영 및 제작 용역 등) –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하거나 프로젝트 완성도를 위해 필요할 때, 혹은 예산 절감을 위한 경우에만 지출가능(그 외 업체와 계약하여, '업체용역비'로 지출) – 예산 절감근거로 용역업체 비교견적서 필수 첨부(증빙 시) – 계약서(표준계약서 또는 권장 양식) 작성 필수 ※ 계약서 상 일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사례내용(항목), 금액을 명확히 기재 ※ 경력증빙을 위한 이력서 및 결과물 증빙 필수 ※ 지급내역서, 영수증 작성 및 원천징수 후 당사자 계좌로 계좌입금 원칙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인 후 지출 필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이트 참고)	

<table>
<tr><th>목</th><th>세</th><th>세세목</th><th>내용</th><th>비고</th></tr>
<tr><td>여비
(220)</td><td>국내
여비
(01)</td><td>도외
여비
(특강
강사,
자문 등)</td><td>● 출장경비 지급 기준
<table><tr><th>구분</th><th>내역</th><th>지급방법</th><th>지급액</th></tr><tr><td rowspan="2">도외
지역
이동</td><td>교통비</td><td>실비</td><td>(지출 가능) 항공료, 승선료 실비 지급
(지출 불가) 유류비, 택시·버스비, 렌터카, 도로 통행료</td></tr><tr><td>숙박비</td><td>실비
(1박 1인 기준)</td><td>·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80,000원
· 그 밖의 지역 : 70,000원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밖의 지역’에 해당</td></tr></table>※ 반드시 여비 지출 전 담당자와 논의 후 지출할 것
※ 단체 자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참여인력 여비 편성 시에도 위 기준 적용
※ 거주지가 도외 지역인 연구원, 주강사, 보조강사를 위한 단순 여비는 적용 불가</td><td>공통
사항</td></tr>
<tr><td></td><td></td><td>도내
여비
(강사)</td><td>● 강사 교통비 지급
– 인터넷 포털사이트 지도검색 활용 거리 계산
–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 거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
– (해당 교육일) 왕복 50km 이상 : 10,000원 실비 지급
– 교부신청 시, 재단 담당자의 강사 거주지 정보 확인(등본 등 서류 확인) 및 승인 후 집행 가능
수업 종료 후 지급 원칙 ※ 부정수급 시 추후 반납조치</td><td>공통
사항</td></tr>
<tr><td>사업
추진비
(240)</td><td>사업
추진비
(01)</td><td>교육
활동비</td><td>사업추진비 전체 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불가
<table><tr><th>구분</th><th>적용대상</th><th>지급액</th></tr><tr><td>다과비</td><td>교육 참여자</td><td>1일 1인 1식 기준 단가 8,000원
[예시] 교육 참여자 10명 = 8,000원 × 10명 = 80,000원</td></tr><tr><td>회의
식비</td><td>사업 참여인력
(기획자, 강사,
보조인력 등)</td><td>1일 1인 1식 기준 단가 8,000원
[예시] 참여인력 6명 = 8,000원 × 6명 = 30,000원</td></tr><tr><td>행사
추진비</td><td>교육 참여자 및
사업 참여인력</td><td>1일 1인 1식 기준 30,000원
[예시] 총 인원 30명 = 8,000원 × 30명 = 240,000원</td></tr></table>– 구분별 적용대상에 맞춰 지출 필수
– 회의식비의 경우 수업 회차 + 10% 내 편성 가능
[예시] 총 수업 회차 20회차일 경우 20회+2회 = 총 22회 집행 가능
– 행사 추진비는 교육 회차 외의 현장학습, 결과보고회 등 1회성 이벤트에 사용
※ 본 예산은 1인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
※ 지원받은 예산 규모 내 적정성을 고려하여 교육활동비 책정 필요</td><td>공통
사항</td></tr>
</table>

목	세	세세목	내용	비고
인건비 (110)	보수 (01)	교육사 인건비	● 인건비 1인 월 환산액 2,387,407원(시간급 11,423원) × 근무개월 ※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사업〉 유형에만 적용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며,「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년 생활임금 고시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 협약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단, 발생 비용은 채용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함) * 근무 개시 후 3일 이내 관련 법규에 따라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신고 필수	해당 시
	일용 임금 (04)	보조 인력	● 단기용역비(일용직) 1인 기준 최대 1일 8시간, 92,000원 - 2024년 제주도 생활임금 시간급 11,423원 적용 - 실제 예산 편성 시 백원단위 올림 하여 총 지급액 계산 ex) 3시간 × 11,423 = 34,269 → 34,300원 ● 보조인력은 현장학습 및 결과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일시적인 활용 및 반주자, 사진 및 영상 촬영 등의 조력 역할 수행 시 편성 - 연간 30일 이내 활용 가능하며 단 1일 근무라도 고용산재보험 신고 권고 (미신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단체에 있음) ※ 보조 인력은 행정업무를 위한 인력으로 활용 불가	공통 사항

연구실험형 트랙

첫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공모내용

문화예술교육 신규 인력 및 단체를 발굴,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인큐베이팅 과정 지원

지원 규모

개인 또는 단체 당 최대 5백만원 이내 ※ 기획비 1백만원 별도 지급

지원 자격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된 적 없는 개인·단체·기관·시설

※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란 꿈다락 문화예술학교, 전 생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구.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유아/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첫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사업,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 등 재단에서 추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개인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단체, 시설, 기관의 경우 제주소재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소지하야여 함

지원 대상

- 제주도내에서 활동중인 예술가 및 기획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할 수 있는 또는 운영 의지가 있는 개인·단체·기관·시설
  -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 질문, 관심, 이슈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확장시켜보고 싶은 분
  - 평소 생각했던/관심 있던 문화예술교육 아이디어를 시도해보고 싶은 분
  - 참여자와 문화예술을 통해 경험을 나누고 함께 감각을 깨우는 교육 과정에 관심 있는 분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성장 과정 지원(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필드트립 등)
- 프로그램 기획비(정액 1백만원) 개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또는 기획자 지급 ※ 원천세 포함

※ 중요 안내

- 보조금 지침 상 중복 지급 불가함에 따라 기획비 지급 대상자는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타 사례비(주강사 및 보조강사 등) 지급 불가
- 세법 상 지원사업 선정자가 본인에게 예산 집행 불가함에 따라 개인으로 신청, 선정 시 기획비는 재단이 별도 지급하나,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타 사례비(주강사 및 보조강사 등) 지급 불가

- 프로그램 시범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최대 5백만원 이내)

※ 성장 과정(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필드트립 등) 80% 이상 참여하여 프로그램 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기획비 및 소요경비 지원

지원 조건

- **프로그램 제안**
  - 개인 또는 단체의 활동, 질문, 관심, 이슈를 기반으로 프로그램 운영 대상, 기획 의도, 활동목표를 자유롭게 제안 (**최소 3회차 이상**, 대상, 내용, 활동 방식 등에 제한 없음)
  - 참여자와 예술적 경험을 함께 나누며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향하며, 일방향적으로 '가르치는 형식'의 교육방식(기능교육)은 지양함
  - 제안된 프로그램은 성장 과정 지원 단계에서 컨설팅을 거쳐 조정, 최종 확정됨
- **성장 과정 필수 참여**
  - 성장 과정(컨설팅 3회, 필드트립 4회)을 통해 프로그램 세부 실행 계획안 수립 (성장 과정의 80%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실행 계획 제출 후 기획비 및 시범 운영 지원금 교부)
  - 성장 과정 외 재단에 추진하는 워크숍, 모니터링, 성과공유회 등 적극 참여

운영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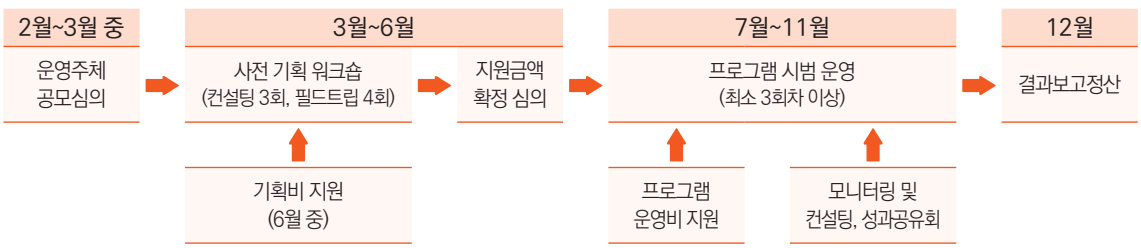

※ 위 운영 절차 및 일정은 향후 추진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운영 장소

- 제주도내 문화예술기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단체 자체 보유 공간 등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자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영 장소 선정

  ※ 심의 후 장소 확정 가능하며, 운영 주체의 보유공간이 아닌 경우 공간 제공에 대한 '협약서' 작성 필수)

  ※ 학교, 학교 법인으로 인가받은 특수·대안학교, 종교시설, 학원 등 운영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심의 또는 선정 이후 변경 요청 할 수 있음

  ※ 장소·차량·기자재 임차비 전체 사업비 10% 이상 편성 불가, 장소 임차비의 경우 1회(3시간 기준) 최대 5만원까지 활용 가능(상시 교육 활동 장소에 한함)

의무사항

① 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배포된 지침(예산 집행 기준 등)에 따라 사업 수행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사업 교부 신청, 변경 신청, 집행·정산

③ 지원사업 종료 및 정산 기한 준수(미준수 시 차년도 지원사업 감점 부여)

④ 사업 진행 시, 안전한 활동 환경(인권 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환경보호 등) 조성 노력

⑤ 사업 현장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 재단의 사업 관리 적극 협조

⑥ 사업 진행 시 기록(사진, 영상 등) 필수, 정산 시 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선정단체(기관) 정보
- 참여 인력 이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예술인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서약서

② (개인) 주민등록등본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협력기관 협약서(해당 시 필수)

심의 기준

지표	세부 심의내용	배점
목표의 적정성	• 신청자(또는 신청단체)의 활동 철학과 목표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가 • 그 목표와 철학이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가	30
계획의 적정성	•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주제)와 실행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 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원(인력,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는가	30
프로그램 실험력	•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신청자(또는 신청단체)만의 새로운 시도(탐구)를 하고 있는가	20
발전가능성	• 이 사업을 통해 신청자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가	20
합계		**100**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인터뷰 심의	3차 선정자 최종 확인
신청자격 확인(가/부결정)	전문가 심의	선정자 최종 확정
자격요건 및 제출자료 검토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지원신청서 심의 (심의위원회 3인 초과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함)	심의결과(점수)에 따른 선정자 최종 확정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

공모 내용

문화예술교육 인력 및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개자 간 다양한 주제를 탐색, 연구하거나 사회문제 또는 이슈를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실험 해보는 학습 공동체 활동 지원

지원 규모

단체당 5백만원~1천만원 이내

지원 자격

- 제주도내 문화예술교육 활동 경력 3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관, 시설

'문화시설'의 범위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공연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도서시설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및 제5호, 제6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등)
-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의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정의한 생활문화시설
- 기타 상위법 또는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등록된 시설 중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간

'예술(교육)단체'의 범위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예술(교육)단체

공모 유형

- **① 연구형 ② 실험형**

유형	주요내용
① 연구형	교육 대상 또는 주제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과정 지원
② 실험형	다양한 사회 이슈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또는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행 지원

기타 사항

- 가점부여 : 문화예술교육사 참여
- 감점사항 : 2023년도 제주문화예술교육 사업 정산 지연 및 미제출한 단체·기관·시설

필수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 선정단체(기관) 정보
- 참여 인력 이력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예술인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서약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③ 활동증빙서류

④ 협력기관 협약서(해당 시 필수)

⑤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해당 시 필수)

심의 기준

지표	주요내용	배점
적합성	• 공모 사업의 목적과 지원 방향에 부합하는가 • 공모 내용과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구 과정 또는 프로젝트·캠페인의 실행과정이 설계되었는가	30
제안 프로젝트 우수성	• 단체의 활동·비전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과정 또는 프로젝트·캠페인 기획력이 우수한가 • 연구 또는 프로젝트·캠페인의 혁신성, 실험성, 도전성이 있는가	25
실현 가능성	•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구체성이 있는가 • 연구 또는 프로젝트·캠페인 실행 및 접근방법이 적합한가	25
운영 역량 및 성장 가능성	• 연구 또는 프로젝트·캠페인 실행 과정 등을 충분히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 본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단체의 성장 가능성이 엿보이는가	20
	• (가점) 문화예술교육사(1인 2점, 최대 5점)	–
	• (감점) 전년도 정산 지연 및 미제출(최대 -5점)	–
합계		**100(±5)**

심의 절차

1차 행정심의	2차 서류·인터뷰 심의	3차 선정자 최종 확인
신청자격 확인(가/부결정)	전문가 심의	선정자 최종 확정
자격요건 및 제출자료 검토 (지원신청서 등) 미제출 시 탈락	심의기준에 따른 지원신청서 심의 (심의위원회 3인 초과 구성 시 최고, 최저점 제외하여 평균점수를 산술함)	심의결과(점수)에 따른 선정자 최종 확정

행정심의 결격사유

- 지원신청 대상 및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 시 필수 제출자료의 누락이 있을 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내 정보방 〉 내 회원정보'가 제출한 지원신청서와 다를 시
  (반드시 작성 및 최신 정보로 수정)

공모유형별 개요

운영 목적

연구형	실험형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소 갖고 있던 고민 또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보완을 위하여 주제를 선정·연구하는 과정 지원	문화예술교육의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젝트 또는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 형태의 캠페인 운영 지원

교육 대상

연구형	실험형
해당없음	구체적인 대상 제시 (O) 4~60대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유아-조부모, 제주오일장 이용객 및 상인 (X) 제주도민, 전 연령, OO리 주민

교육 장소

연구형	실험형
해당없음	구체적인 장소 (O) OO문화기반시설, OO공간, 시민복지타운 (X) 제주도내, 서귀포시 일대 • 제주도내 문화기반 시설, 단체 자체 보유공간 등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자에 적합한 교육장소 선정 ※ 심의 후 장소 확정 가능하며, 운영 주체의 보유공간이 아닌 경우 공간 제공에 대한 '협약서' 작성 필수 ※ 학교, 학교 법인으로 인가받은 특수·대안학교, 종교시설, 학원 등 운영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심의 또는 선정 이후 변경 요청할 수 있음

지원내용

연구형	실험형
연구 활동 과정 운영비 전반 • 운영 주체의 예술적 연구 전문성을 기반으로 연구 목적, 유형, 대상, 지향점 등에 부합한 문화예술교육 연구과정 지원 • 지원범위 : 문화예술교육 연구과정 연구활동비, 결과보고서 정리를 위한 인쇄물 제작비	프로젝트 실행 또는 캠페인 운영비 전반 • 운영 주체의 예술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원 목적, 유형, 대상, 지향점 등에 부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캠페인 기획 및 운영비 지원 ※ 문화예술교육 가치 확산을 위한 팝업 프로그램 또는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실행 • 지원범위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강사비, 소요경비 등

지원 조건

연구형	실험형
• 선택한 주제와 단체의 활동 방향(비전)을 기반으로 한 연구 과정 지원 • 연구결과 공유(발표) 필수 – 결과물은 다양한 주제의 실험과 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운영기준 – 최소 6회차 이상 운영 – 1회차 당 최대 3시수 편성 가능(준비시간 1시간 포함) – 프로젝트 및 캠페인 참여 인원은 규모에 따라 목표인원 설정 • 기획자 및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예술가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프로젝트 및 캠페인 참여 인원은 규모에 따라 배치 • 대면 추진 필수 (전염병 등의 사유로 대면 추진이 불가한 경우 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대체 계획 수립) • 각 활동(프로젝트·캠페인 운영 등)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의무사항

① 지원사업 관련 법령 및 배포된 지침(예산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업 수행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지원사업 교부 신청, 변경 신청, 집행·정산
③ 지원사업 종료 및 정산 기한 준수(미준수 시 차년도 지원사업 감점 부여)
④ 사업 진행 시, 안전한 활동 환경(인권 보호, 성희롱·성폭력 예방, 환경보호 등) 조성 노력
⑤ 사업 현장 모니터링, 평가, 전문가 컨설팅 등 재단의 사업 관리 적극 협조
⑥ 사업 진행 시 기록(사진, 영상 등) 필수, 정산 시 자료 제출
⑦ 참여자 모집 및 참여자 관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자 모집) ※ 실험형 해당

연구형

공모
세부내용

연구진 구성

- 단독(1인) 연구진 구성 불가
- 단체의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 구성

연구 내용

- 문화예술교육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평소 갖고 있던 고민 또는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선·보완을 위하여 주제를 선정·연구하는 과정 지원
  - 연구 관련 자료는 제주문화예술재단과 적극 공유
- 연구 진행 과정 내 재단 주최 컨설팅 또는 워크숍 필수 참석(추후 일정 안내)

연구 활동 증빙자료

- 증빙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맞춰 필수 제출
  - 월별 연구 활동 일지
  - 최종 연구 결과 보고서

재단-단체 협력 관련

- 재단 주최 사업 운영 관련 워크숍 및 행사에 대해 단체당 1인 이상 참석 필수

  ※ 컨설팅,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 (5월 예정), 성과공유 행사(11월 예정) 등 각 일정은 진행 최소 1~2개월 전 안내 예정
- 그 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 및 진행하는 행사, 일정에 대해 적극 협조 권고

실험형 프로그램 운영 기준

공모 세부내용

- 운영기준
  - 최소 6회차 이상 운영
  - 1회차 당 최대 3시수 편성 가능(준비시간 1시간 포함)
  - 프로젝트 및 캠페인 참여 인원은 규모에 따라 목표인원 설정
- 프로젝트가 현장학습(기존 교육장소 외 공간 및 실외 진행) 형태로 진행 시 준비시간 포함 최대 5시수까지 편성 가능
- 프로그램 운영 시 회차별 상세 내용, 각 인력별 수행 역할, 활동사진 등이 담긴 '출강확인서' 제출
- '대면' 방식이 원칙이며, 프로젝트 특성 상 또는 전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비대면' 진행이 필요한 경우 재단 담당자와 별도 협의 진행
-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교육이 원칙. 다만,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위해 보증금 또는 참가비 자부담 운영 가능

강사 구성

- 기획자 및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사,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있는 예술가 등 전문가로 구성하며 프로젝트 및 캠페인 참여 인원은 규모에 따라 배치

교육 장소

- 제주도내 문화예술기반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단체 자체 보유공간 등 프로그램 내용 및 참여자에 적합한 교육장소 선정
-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공간 조성, 기자재 보유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
- 교육장소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실내/실외 활동 가능하나, 실외 활동의 경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사 관련 보험 가입 필수
- 실내 활동의 경우에도 참여자 안전을 위해 공간 내 상해 및 시설안전보장 보험(영업배상책임, 화재 등) 가입 필수

※ 운영 주체의 보유 공간이 아닌 경우 해당 공간의 시설안전보장 보험(영업배상책임, 화재 등)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보험의 보장 내용을 프로그램 진행에도 동일 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협약 체결 필수

기타 지원사항

-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교육 운영 시 강사 거주지와 교육 장소 간 왕복 50km이상 시 강사 여비 지급
  ※ 상세사항은 예산편성 가이드 확인
  ※ 연구형의 경우 해당없음

재단-단체 협력 관련

- 재단 주최 사업 운영 관련 워크숍 및 행사에 대해 단체 당 1인 이상 참석 필수
  ※ 컨설팅, 모니터링, 역량강화 워크숍 및 라운드테이블,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5월 예정), 성과공유 행사(11월 예정) 등 각 일정은 진행 최소 1~2개월 전 안내 예정
- 그 외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기획 및 진행하는 행사, 일정에 대해 적극 협조 권고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문화예술재단 JFAC Jeju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문 의

예술지원(예술지원팀)

• 장애예술창작활동지원/국제예술교류지원 문화예술연구 및 비평 지원/창작공간프로그램지원	064-800-9131
• 청년예술인 해외활동지원	064-800-9134
• 제주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064-800-9182

문화예술교육지원(예술교육팀)

• 첫 문화예술교육/주제 연구 활동 지원사업	064-800-917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문의 1577-875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제주문화예술재단